



## IX. 베트남

1. 진입장벽 특징 • 361
2. 도입 취지 및 배경 • 361
3. 통관 및 검사 관련 기관과 역할 • 362
4. 주요 진입장벽 • 365
5. 진출시 고려사항 •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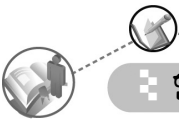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 IV

## 1. 진입장벽 특징

- 외국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부패를 꼽고 있음
  - 베트남은 2007년 국제부패 투명성 인지도 지수에서 10점 만점 중 2.6점을 기록하여 179개국 중 123위를 차지하였음
  - 대부분의 경우, 널리 퍼져있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와 함께 투명성 결여, 신뢰성, 언론 자유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베트남 공산당 및 베트남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도 이같은 문제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였음
  
-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해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정부 기관간의 경쟁으로 관할영역, 행정절차, 승인 등의 부문이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부패 기회로 이어지고 있음
  - 공무원의 낮은 임금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부적절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세계은행 등의 도움으로 개발된 베트남 공공행정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 도입 취지 및 배경

- 베트남은 농업국가로 자국산 농산물 보호와 수출에 힘쓰고 있음
  - 자국산 농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입이 자유로운 편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80%가 농업에 기초하고 있고 생산은 소규모인 농업국가로 자국내 식품가공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품수입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음

- 식품수입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베트남내의 생산 식품에 비해 더 엄격하지는 않으며 국제적인 표준이나 자국의 식품안전법에 부합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됨

3

통관 및 검사 관련 기관과 역할

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1) 감독 범위 및 주요업무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정책, 전략, 기획의 관장 및 수립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법규의 공표, 제정 및 적용,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기준 관련 규정의 공표 및 적용
- 식중독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적용
- 식품위생, 안전 및 vnawfl에 대한 각급 정부관리기관 활동의 조직 및 관리
- 식품 생산/유통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기준 고시 업무 관장
- 식품위생, 안전, 품질, 품질관리체계의 인증
- 식품 생산자/유통업자의 위생,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식품위생, 안전, 품질점검 및 보증
- 식품가공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동, 기술 개발 적용
- 식품 관련 전문적 및 기술적 교육훈련 조직 및 관리
- 정보관리, 지식보급 활동 및 법령 반포

- 식품 관련 국제 협력 추진
- 식품 관련 규정 준수 심사 및 통제, 식품 규정 관련 항의/제소 및 위반사례 처리

## 2) 조직

-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 Drug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 Cosmetic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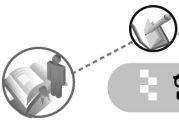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 3) 연락처

-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138 Giang Vo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 Tel : +84-4-846-0157, 0347
  - Website : [www.moh.gov.vn](http://www.moh.gov.vn)

## 나. 식품관리청(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

### 1) 감독 범위 및 주요업무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의 집행 및 관리감독
- 식중독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위생감시 및 지도
-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업무
- 식품 관련 기술교육 및 훈련 실시
- 식품 관련 규정 준수 심사 및 관리감독



## 2) 조직

- Department of Foodstuffs Safety, Hygiene and Quality Control
-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Division

## 3) 연락처

- 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 135 Nui Truc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 Tel : +84-4-846-3754
  - email : [cucqltp@hn.vnn.vn](mailto:cucqltp@hn.vnn.vn)

## 다. 세관

### 1) 의무와 권한

- 세관절차 집행, 세관검사, 감시, 수사 수행
- 수출입, 수출입 관세 및 관할 범위 내에서의 기타 임무 수행에 관한 국가의 규정 집행
- 밀수 및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물 운송하는 행위, 관할 범위 내에서의 관세에 관한 국가의 다른 규정 위반 행위의 발견, 예방, 조사 및 처리
- 관세에 관한 국가의 통계 작성
- 수출입,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입차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및 관리 방법 제안 및 관세에 관한 국가의 규정정립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개인을 안내
- 세관 직원의 훈련, 계발 및 배치
- 각국 세관과의 국제협력

## 2) 조직

- 세관 총국
- 성 또는 성간 세관, 중앙직속 또는 동급의 시 세관
- 관문세관, 세관 수사대

## 3) 업무수행 구역

- 관문, 해항, 국제하항, 국제민간항공 구역, 국제우체국
-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경, 해안, 해도, 영해에 인접한 지역 및 내륙지의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세관 감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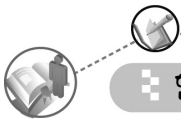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4. 주요 진입장벽

## 가. 식품수입 절차

-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도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표준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제적인 표준이나 수출국의 식품안전법에 부합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음

### 1)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함



## 2) 신고서류 제출

- 베트남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기준 신고서 1부
  - 기업의 기초기준서 2부
    - 식품 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 기준, 중금속 기준, 식품첨가물 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공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원산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 식품 수출기업의 직인이 포함된 식품 표시내용서 또는 상품 표시 제안서
  - 원산지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 기타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 베트남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국가나 제3국의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됨

## 3) 신고서류 심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에서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베트남 법규 준수 여부 심사
- 해당 서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
-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품질기준 신고를 한 경우, 서류심사가 종료된 후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 관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초 기준서 사본 1부를 반환
- 신고기준이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준신고를 재작성



#### 4)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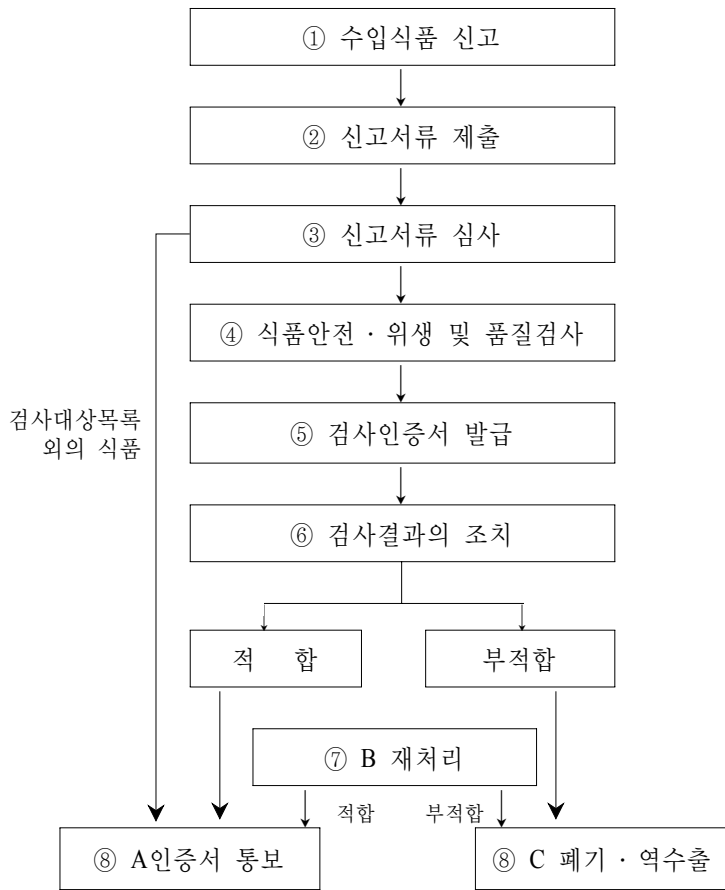
-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을 검사할 책임이 있음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은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 요건 관리 규정에 기초하여, 베트남 정부는 위생,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강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한 기간동안 적용되는 수입식품의 목록을 공표하여야 함
- 베트남 정부와 외국간의 상호인정 협정(MRA)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서 허가 받은 조직/기관이 발행한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 위생, 안전 및 품질 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아니면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5) 검사인증서 발급

- 국가품질관리 대상 수입식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식품은 해당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되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 관련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검사를 받음

#### 6) 검사결과의 조치

- 위생, 안전 및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인증서가 세관에 통보되고 만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역수출되어야 함
- 베트남 식품관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수입식품검사 Flow Chart

## 나. 관세 및 통관제도

### 1) 통관수속의 흐름

- 베트남에서는 수출입시 수출입자 코드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음
  - 신청은 관할세관에서 행해지고 5일 정도에 취득할 수 있음
- 수입통관의 수속흐름은 수입신고 → 세관서류의 등록 → 화물검사 → 관세액 심사 → 관세납부 → 화물인수 순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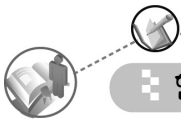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량 화물검사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대략 10% 정도의 화물만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실시 여부의 기준은 신고자의 프로필, 정부의 수입정책, 수입선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함
- 베트남 수입통관수속의 특징은 수출가공용의 원재료 수입에 관하여 관세납부가 유예되고 있는 점으로 수입후 9개월(275일간)의 관세지불 면제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다른 ASEAN 국가, 예를 들면 태국 등에는 수입용 원재료의 수입관세의 환급 수속이 번잡하여 환급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있음. 관세의 지불이 유예되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나, 9개월을 초과해서 원재료가 베트남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실제의 납부일부터 지체세가 징수되는 한편,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국내소비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납부가 화물의 인수조건이지만 납부보증이 있으면 당사자도 30일간의 납부유예가 주어짐. 즉, 베트남에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통관수속의 EDI는 수입신고에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서면양식에 의한 신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 관세분류제도

- 베트남은 98년 7월에 HS조약에 가맹하고 있어 HS코드를 토대로 한 상품분류를 행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AHTN(ASEAN 공통관세 코드)를 도입하고 있어 역내, 역외를 포함하여 관세분류는 AHTN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사전교시제도는 2003년 8월부터 도입되어 있으며, 지방의 각 세관사무소에서 판단을 함. 그러나,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분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전국의 사무소에서 공유화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도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3) 조정제도(이의신청제도)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관세분류와 평가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음. 지방세관 사무소에서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도사무소, 세관총국, 재무성의 순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4) 사후조사제도

- 사후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개정관세법 2002년 1월 1일 시행) 제32조에 「위반의 징후」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어 세관에서부터 출선하여 조사하는 제도는 아님. 또한, 조사실시 기간도 5일로 단기간으로 제약되어 있으며, 조사에 소급할 수 있는 것은 5년간임

### 다. 인삼제품 수출입 통관제도

#### 1) 관세율

- 베트남 인삼은 아주 소량 재배하는 관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품목에 따라서 10% ~ 20%의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도 있지만 거의 30%의 수입관세와 10%의 부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고 50% ~ 100%까지 적용받는 품목도 있어 정상적인 세관 신고를 기피하고 어쩔 수 없이 실제 매입금액의 20% ~ 30%만 언더밸류를 적용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실정임

#### 2) 분류 및 관세제도 현황

| H.S Code   | 품 목                     | 일반관세 | 부가세 |
|------------|-------------------------|------|-----|
| 1211.20.90 | 수삼                      | 0%   | 5%  |
| 1211.90.13 | 영지버섯,                   | 10%  | 5%  |
| 1211.20.10 | 생인삼 절편, 분말              | 10%  | 5%  |
| 2106.90.53 | 인삼차,인삼엑기스,홍삼차,홍삼환 등 차종류 | 20%  | 10% |
| 2601.90.59 | 홍삼절편,정과,캡슐,드링크 대다수 인삼제품 | 30%  | 10% |
| 3307.90.90 | 인삼-홍삼 마스크팩              | 50%  | 10% |
| 3401.11.20 | 인삼-홍삼비누                 | 50%  | 10% |
| 1704.90.90 | 인삼캔디                    | 50%  | 10% |
| 2208.70    | 인삼주                     | 100% | 10% |

### 3) 통관제도 및 등록·허가절차

#### 가) 통관제도

- 통관시 수입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SAFETY FOOD” LICENCE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통관 후 추후 서류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수입절차는 수입상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곤 함

#### 나) 등록·허가절차

- 베트남 식약청의 “SAFETY FOOD” LICENCE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샘플과 CERTIFICATE OF ANALYSIS, CERTIFICATE OF FREE SALES, CERTIFICATE OF INGREDIENT을 베트남 식약청에 제출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SAFETY FOOD” LICENCE를 받아야 하며, 발행 수수료는 품목당 US\$30정도이지만 관행적으로 UNDER TABLE MONEY(뇌물)를 요구하여 US\$200 정도의 비용이 지출됨

### 4) 검역제도 및 라벨링 규정

#### 가) 검역제도

- 인삼의 수입 통관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검역제도는 현재까지 없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 무작위(Random)로 수집 후 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의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지도록 되어있음

#### 나) 라벨링 규정

- 베트남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수입식품에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명, 성분, 중량, 원산지표시, 수입자명, 수입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제조자의 표기로 인정됨

### 5) 수출입 통관시 문제점

- 수입통관 시 통관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SAFETY FOOD LICENCE가 제품별로 있어야 하며, 사실 많은 제품들의 LICENCE를 다지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보완 조건으로 UNDER TABLE MONEY(뇌물)가 지불되기도 함. 그리고 30%가 넘는 관세율의 부담이 수입자에게는 판매 가격 경쟁력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려움



- 베트남에서의 타국가 인삼제품은 거의 보기가 어려움. 중국산제품의 경우 모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판매를 하고, 가령 중국산이라 표기를 하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판매가 되지 않을 만큼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인삼제품의 인지도가 높음. 간혹 뿌리삼의 경우 중국제품이 있으나 판매는 부진 한편이고, 북한산의 경우 정체를 알 수 없는 백두산 산삼과 장뇌삼 등이 유통되거나 거래는 미미함. 그러므로 국가별 인삼제품 주력상품은 없고 단지 유사모조품만 있을 뿐임

## 라. 식품 관련 관리제도

### 1) 식품첨가물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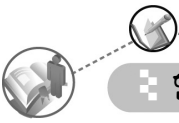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또는 식품의 주성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영양소적 가치는 거의 없으나, 식품에 제한적으로 포함되는 무해한 성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형태, 향취, 염기성이나 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또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및 보관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 독성 미세균류, 중금속, 식물방부제, 동물약품 등의 오염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보지 않음
- 베트남 정부는 식품첨가물 및 식품첨가물군의 명칭을 영어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모든 정보(세부 분류, 기술적 기능) 등은 베트남어로만 표기되어 있음
- 식품첨가물은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첨가물순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JECFA(식품첨가물에 대한 FAO/WHO) 합동 전문위원회)가 정한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베트남 보건부가 승인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베트남에서의 식품첨가물 제조자는 등록신청서류에서 해당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제한 사용량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내용은 관련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산지나 식품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나 용기가 파손된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보건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사용할 수 없음

## 2) 농약 및 오염물질 관리제도

- 베트남에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농약 및 오염물질 잔류물의 함유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식품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소비자들을 중독이나 기타 악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식품에 함유된 농약 및 오염물질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마이코톡신, 미생물, 중금속, 수의학용의약품, 식물보호화학물 등이 포함됨
- 식품 내 식물보호 화학약품 허용기준치
  - 식물보호 화학약품이란 화학물,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채취하여 식물자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완제품을 말함. 모든 식품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단계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약품(mg/kg) 기준치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서는 안됨
- 식품내 중금속 잔류물
  - 베트남에서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모두 농약의 허용기준치는 동일하나 CODEX 표준에서 특정식품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 농약잔류물 함유량 관련규정은 적극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함

## 3) 포장 및 용기 관리제도

- 수입식품 용기의 크기나 중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포장재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규정은 있음
  - 베트남 식품안전법 Part B(식품 포장 재료 안전성 및 위생 표준)의 Stage II (오염물질 제한) 내의 제1장(식품 첨가물 및 오염물질 제한)에 등재된 식품위생 기준목록과 보건부 법령 867호에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보건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장재료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세라믹 및 유리, 합성수지, 합금 등의 포장재료에 적용됨
- 각각의 포장재료 분류에 대해서는 “불순물 허용치에 대한 규정” 및 “각 포장재료 분류의 하위 분류”에 대한 검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5 진출시 고려사항

- 통관관련 세관원들의 뇌물수수 관행 등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수출업체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국영기업의 경우 커미션 등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추가비용을 염두에 두고 견적서 작성
  - 최근 감찰 강화에 따라 세관원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를 회피(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커미션 수수)
- 신규 진출업체는 사전에 통관업무 숙지 및 통관 전문업체 조언을 통해 수출입 서류를 완벽히 작성, 시비소지 차단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 [참고 1] 식품수입에 관한 베트남 규정

### 1 식품의 기준 공개

베트남 보건부 장관의 2005년12월 8일 자 결정서 42/2005/QD-B와 함께 공포된다.

#### <일반규정>

##### 1. 범위와 적용대상

###### 1) 조절범위

a) 이 규제는 제품공개에 관한서류, 공개절차, 제품의 기준공개 기한연장 및 검사, 검사와 제품의 기준 공개과정의 비용과 보고에 관해 규정한다,

b) 공개해야 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제품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원료,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원료와 베트남에서 소비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료이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품 (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지 및 용기, 이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주원료) 과 수출목적의 제품 역시 이 문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기준 공개를 권장 받는다.

c) 품질이 불안정한 제품들, 매일 사용하기 위해 간단하게 포장되는 제품과 일반적인 환경조건에서 10일 이내 사용되고 단기 주문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들은 이 규제서에 따라 제품의 기준을 공개할 필요없다.

2. 적용대상 : 이 규제는 베트남에 경영 등록된 식품의 경영, 개인의 생산공장 및 생산공장과 식품을 베트남 소비시장에 유통시키는 외국회사 대표에 적용된다.



## 2 수입식품

- 1) 수입식품은 제 2조10항에 언급된 특수식품이 아닐 경우 2부의 서류가 있고,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베트남인의 경영등록서나 외국 생산회사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공증서 복사본)
  - b) 생산자의 제품 기준서(Products Specification)와 생산자의 혹은 수출국의 독립 검증기관의 실험결과표(주요품질지수, 품질지정지수, 식품위생지수에 관한)
  - c) 제품의 상표 혹은 제품의 상표사진과 상표의 부가적 내용의 초안(사업자의 인장필) 상표가 부착된 신청서(심사시 요구가 있을시)
  - d) 국내 및 국외에서 공증된 다음과 같은 인증서들 중 하나의 복사본(if any) : GMP 증명서(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혹은 이와 상응하는 인증서)
  - e) 인정서 발급기관의 서류 심사비와 인증번호 발급비 영수증사본
  - f) 무역계약서 사본(if any)
  - g) 방사식품, DNA 변형식품, 최신기술적용식품 혹은 원료성분에 유전자변형식품 이나 방사식품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서류에는 생물학적 안전증명서, 방사안전 증명서와 생산과정 설명이 있어야 한다.
- 2) 첨가물, 가공보조 첨가물의 서류
  - a) 첨가물, 가공보조물에 대한 수출국의 권한기관의 자유 유통인증서나 보건인증서
- 3) 제 2조10항에 언급되는 특수식품의 경우 2부의 서류가 있고,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2조10항** : 특수식품이란 특수성질이 있거나 특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특별한 사용방법이 있거나 건강에 관해 특별히 사용되는 제품을 부르는 말이다.

특수식품은 이 규제서의 적용을 받고 최신의 기술로 생산된 제품이며, 다음과 같은 제품을 포함한다.

-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품
- 중환자에게 호스로 공급되는 영양식품
- DNA 변형식품
- 방사 식품
- 기능성 식품

#### a) 특수 식품류에 대한 구체적 요구

-식품은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품이다 : 수출국의 관련기관의 자유 유통인증서 혹은 보건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와 사용 대상과 해당해야 하는 증명내용이 있다.

그중에는 사용나이와 사용대상자에 적합한 제품 인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학 영양 식품 : 그 제품의 기능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 추가.

-기능성 식품 : 기능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추가 혹은 식품의 특효작용 및 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증명자료.

#### 4) 사용제한 식품 첨가물

a) 식품 첨가물은 베트남의 사용허가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생산국의 생산허가를 받았더라도 **Condex** 목록에 있는 경우, 보건부(식품위생안전국)는 제품의 기준 공개를 하고, 수입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검토하게 됨.

#### b) 종합적 단맛의 화학물질

-만약 일회용으로 작게 포장되거나, 혼합된 형태일 경우 : 사업자는 베트남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식품첨가제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한 포장 형태일 경우 : 사업자는 다이어트 식품(환자용, 비만자용, 다이어트용) 생산자의 수입위탁서 혹은 다이어트 식품 생산자와 계약



할 경우에 따라 수입할 수 있다. 첫 번 수입 이후 재수입시 사업자는 영수증이나 다이어트 식품 생산자에게만 판매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c) 완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질(포장용기), 수입된 식품첨가물, 기업내부에서 서비스 위해 생산되거나 자사의 호텔, 슈퍼마켓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입된 제품, 기업은이 규제서와 함께 공포된 신청서에 기재 목록에 따라 공개한다.
- d) 보건기관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은 합법적 번역서를 규정에 따른 외국어로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어야 한다.

### 3 공개절차

- 1) 사업자는 이 규제서와 함께 공포되는 신청서 2에 따른 기초 기준서와 신청서 1에 따라 “제품의 기준 공개서”로 기준을 공개한다.
- 2) 천연광천수, 특수식품 경영자 및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에 접촉되는 원료, 첨가물 식품수입자는 보건부(식품위생안전국)에서 기준공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규정된 권한기관 혹은 위탁받은 기관은 서류를 접수받고 정부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며 합법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간 진행되며 각 기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a) 제품기준 인증서(이 규제서와 함께 공포되는 신청서 3a,3b에 따라) 혹은 제품기준 인증 기한 연장서(이 규제서와 함께 공포되는 신청서 4a, 4b에 따라)는 서류의 내용이 보건부의 식품안전, 위생, 품질에 관련된 현행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서류의 1부는 신청자에게 반환된다.(발급기관의 인장이 있는)
  - b) 만약 기준 및 식품의 품질, 위생, 안전에 대해 현행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서류를 완벽히 갖추 수 있도록 문서로 통보 및 안내한다.

## 4 기준 공개인증서 번호에 대한 작성규정

1) 보건부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 기재원칙은 다음과 같다.

발급순서 + - 발급 년- + - Y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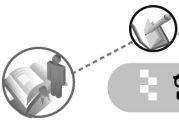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보기 : 234/2008/YT

2) 지방 보건청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 : 위와 똑같이 작성되지만 **YT**라는 약자에는 지방이름의 첫 글자를 더 붙여야 한다. 보기 **123/2007/YTHN** 이것은 “하노이 보건”이라는 뜻이 있다. 지방이름이 중복될 경우, 첫 글자 한글자만 중복될 경우, 연결되는 한글자를 소문자로 작성된다.

예) QNa; Quang Ngai, QNg, Quang Ninh : QNi, Ha Noi : HN, Ha nam :Hna

## 5 사업자의 책임

- 1) 이 규제서의 공개절차에 규정된 보건부의 권한이 할당된 국가기관에서 제품기준을 공개할 책임이 있고, 제품에 대해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규정들을 적용하여 공개기준을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내용의 충실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공개제품 이름은 본 성질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같은 류의 제품 품질에 대해 착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 조건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실행 보장하며, 공포된 품질에 대한 상응하는 기술장비를 보장해야 한다.
- 4) 공개된 내용과 같이 올바르게 유통되는 제품의 광고 및 정보내용, 상표내용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 5) 법률에 따라 건전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 6) 이 규제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제의하거나 주동적으로 실행한다.



- 7) 서류 검사비, 정기적인 제품검사비는 권한을 가진 직접검사를 시행한 기관 혹은 검사 위탁을 받은 기관에게 납부해야 하며 검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사 일정을 통보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결과는 통보 받지 못한다.

## 6

### 제품의 기준 공개서 및 신청서 서류

- 1) 제품의 기준공개서 신청서1
- 2) 기술적 요구 및 구성요소 신청서 2
- 3) 제품 기준 인증서 신청서3a (식품위생 안전국)
- 4) 제품 기준 인증서 신청서3b (인민위원회 보건청)
- 5) 제품 기준 인증서 신청서4a (식품위생 안전국)
- 6) 제품 기준 인증서 신청서4b (인민위원회 보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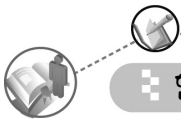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참고 2] 수입식품 통관시 필요 서류와 통관절차

### 1. 무역 수출입품

- 1) 세관서류
- 2) 세관신고
- 3) 세관신고서 등록
- 4) 세관서류검사
- 5) 통관
- 6) 수출입품 관리
- 7) 수출입품 세관봉인
- 8) 관련서류

### 2. 세관서류 : 세관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

1. 수출품에 대해
  - a. 수출신고서(원본), 다종 상품이나 동일하게 포장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자세한 목록서(원본)
  - b. 법적으로 수출승인 필요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허가(원본), 구체적인 사품에 대한 법적서류(원본)
  - c. 계약서 또는 계약서 해당 법적가치가 가진 다른서류(사본), 상업송장(원본), 선적 서류(사본)



- d. 원산지 증명서(원본)
- e. 국가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할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등록서 또는 품질검사 면제서(원본)

2. 수입품에 대해

- a. 수입신고서(원본), 수입품 총액신고서(상황에 따라), 다종 상품이나 동일하게 포장 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자세한 목록서(원본)
- b. 법적으로 수출승인을 필요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허가(원본)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법적 서류(원본)
- c. 계약서 또는 계약서 해당 법적 가치를 가진 다른 서류(사본)
- d. 원산지 증명서(원본)
- e. 국가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할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등록서 또는 품질검사 면제서(원본)

3. 영업자 또는 영업자가 위탁한 자가 이조의 1항-2항에 규정한 사본 서류를 확인, 서명하여 도장찍은 후 서류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4. 세관은 1항-2항에 규정한 서류가 아닌 서류를 신고자에게 제출 요청할 경우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3** 세관신고

- 1. 세관신고는 재무부에서 규정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 2. 신고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상품명, 상품번호, 단위, 수량, 중량, 품질, 원산지, 가격, 총액, 세금과 기타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국가예산에 낼 다른 지불금액과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기재한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 4. 세관신고서 등록

1. 세관신고 등록기한일
  - a.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신고등록 기일은 세관법 28조 1항, 2항에 의거 진행된다.
  - b. 국제수로, 육로, 항공, 국제우편으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출항 2시간 전에 등록해야 한다.
  - c. 세관법 18조 1항에 의거 세관신고 자는 적하전에 세관신고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 d. 세관신고서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자에게 문서로 이유를 통보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지국장은 신고서와 서류원본을(수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승인 제외) 제출 기일을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을 허락한다.
3. 실제 상품검사 또는 실제 상품검사 면제시점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요청한 문서는 세관지국 장으로부터 허가 받을 경우 신고자는 등록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4. 세관법 18조 1항, 2항에 규정된 신고서 발효기간에 수출, 수입할 물품은 신고서를 등록한 시간에 효력이 있는 수출, 수입품관리 정책, 수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적용한다.
5. 세관법 35조에서 규정한 긴급요구로 수출,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자는 통관하기 위해 요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요약신고서를 등록일로부터 15일 내 신고서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요약신고서 내용 :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서명 - 주소, 상품명, 수량, 입항관문, 운송수단)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물품은 요약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발효한 세금정책을 적용한다. 재무부 장관은 세관법 35조 1항에 c 에서 기타 긴급 상황을 규정.

### 6. 1차 세관신고서

- a. 한 계약서에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시기에 한 관문에서 자주 수출, 수입하는 계약서의 물품인도시기에 여러 번 수출, 수입하기 위해 세관신고자는 1번만 신고서를 등록하고 제출할수 있다.
- b. 1차 세관신고서 환급 기일은 마지막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날 또는 계약서 완료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5

### 세관서류검사

1. 검사내용 : 신고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 신고한 내용을 이의정 7조에서 규정된 세관서류와 대조 신고한 내용과 현재법규정의 해당성.
2. 검사한도
  - a. 세관법을 잘 준수하는 화주 :  
세관장은 신고서에 신고한 내용 검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검사, 세관신고서와 서류의 종류, 수량을 검사한다. 과실을 발견할 경우 b 항에 의거 서류를 검사한다.
  - b. 기타 화주 :  
세관장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 세관서류의 종류, 수량, 서류들의 동일성, 법적규정, 수출, 수입 관리정책. 세금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검사한다.



## 6 상품검사

1. 검사내용 : 상품명, 상품번호, 수량, 중량, 종류, 품질, 원산지, 세관서류와 실제 상품의 동일성
2. 검사한도 :
  - a. 검사면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
    - a-1 세관법을 잘 준수하는 화주의 수출입품
    - a-2 기타 화주의 다음 수출입품 :
      - 수출품(수입원료로 제조된 수출품, 수출품관리 정책에 대한 규정에 의한 조건을 따라야 할 수출품)
      - 외국투자사업 또는 국내투자사업의 면세제에 속한 고정된 재산을 제조하는 설비기계
      - 자유무역공간, 중계항, 세관창고(customs warehouse)에 들어가는 외국물품, 배송중 단품 (good in transit), 세관법 35조 a항에서 규정된 긴급구조품, 국방에 쓰는 전용품, 인도 지원품 이 의정 30.31.32.37조 에서 규정된 일시적수입품, 재수출품
      - 정부에서 규정된 기타물품
      - 정보분석결과가 세관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타물품(2항b.1에서의 물품제외)
  - b. 전체상품 질제검사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b-1 세관법을 많이 위반하는 화주의 물품
    - b-2 세관이 세관 법을 위반하는 자국에 발견되는 실제검사 면제된 물품
    - b-3 세관의 정보분석 결과를 통해 세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c. 화주가 세관법을 준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적 검사는 세관신고서의 5%에 불과하지 않다.



### 3. 검사결과 처리

- a. 신고자는 상품명, 상품번호, 중량, 종류, 품질에 대한 세관의 검사결과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하기 위해 세관과 공동으로 전문감정평가기관을 택한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결과에 따라 각 측이 실행한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은 이러한 결과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신고자 와 세관은 감정평가기관의 선택에 대해 의견을 통일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감정평가기관을선택하여 이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세관신고자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규정에 따라 고발한다.
- b. 국가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인 경우에 세관은 통관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기 위해 품질에 대한 검사등록서를 발급하는 일로부터 30일 이내 품질관리기관에 품질에 대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7 통 관

### 1. 세관은 다음 항목에 의거 통관한다.

- a. 실제 상품검사면제인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의 신고 또는 국가검사기관, 감정평가기관의 결론
- b. 실제 상품검사를 받을 경우 세관의 결론
- c. 국가기관에서 품질에 대한검사를 받아야 할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등록서 또는 품질검사 면제서
- d. 감정평가에 필요한 물품의 감정평가서
- e. 수출품, 수출과정에 면세된 수입품, 면세품, 가공품, 특별한 기타물품을 세관 실제 상품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통관한다.
- f. 과세한 수출,입품을 세관신고자가 납세하거나 신용기관이 담보한 후 통관하거나 수출입 관세법 15조 1.c, d.에서 규정된 납세 기일을 적용한다

2. 감정평가결과가 나오지 않는 기간 화주가 수출입품을 보관하고자 하면  
세관관리조건을 부응할 경우 세관지국장이 허락한다.
3. 조건이 있는 통관
  - a. 세관법 25조 2항 3항에서 규정된 경우
  - b. 수출, 수입 가능한 물품인데 세관법 25조 4항에서 규정된 납세금액을 정확히 계산  
하기 위해 물품의 가격확인, 감정평가, 분석, 분류를 해야한다.

**S** 수출입품 관리

1. 관리 품목 내역
  - a. 수출절차를 마무리 했으나 실제 수출하지 않는 물품
  - b. 수입절차를 마무리 했으나 통관하지 않은 물품
  - c. 수출, 수입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세관의 창고에서 보관되는 물품
  - d. 배송종단품(good in transit)
  - e.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물품, 운송수단
  - f. 다른관문으로 운송하는 물품, 운송수단
2. 세관 관리방법
  - a. 세관봉인 : 종이 또는 줄, 전용자물쇠봉인, 이 의정 14조의 규정에 의해 봉인을  
진행한다.
  - b. 세관장의 관리
  - c. 기술수단으로 관리  
세관의 창고가 아닌 창고에서 보관되는 물품인 경우 세관장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단, 세관총국장이 규정하는 경우제외



9

수출입품 봉인

다음 경우에는 봉인되어야 한다.

1. 다른 관문으로 운송하는 물품.
2. 다른 관문으로 운송하는 물품을 관문에서 적하하여 표적관문으로 배송하기 위해 다른 운송수단으로 적재한다.
3. 관문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받은 물품.
4. 수출관문에서 실제 상품검사를 받은 물품.

[참고 3]

2008년 수량제한 해당 수입품목

|   | 분 류      | 품 목        | 단 위     | 수 량     |
|---|----------|------------|---------|---------|
| 1 | 04070091 | 계 란        | 다스(12개) | 32,000  |
|   | 04070092 | 오 리 알      |         |         |
|   | 04070099 | 기 타        |         |         |
| 2 | 2401     | 담배원료       | 톤       | 40,500  |
| 3 | 2501     | 소 금        | 톤       | 230,000 |
| 4 | 1701     | 정제설탕, 설탕원료 | 톤       | 58,000  |